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55호 / 주간 48호

2025. 11. 26.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동업자·과점주주간 법인청산정리 방법론 쟁점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실무적 이해 (3)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적용 대상 및 실무 유형: 예시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 온라인쿠폰 인지세 관련하여 - 법인세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 유상감자 한도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인정 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증여세 비과세 한도 - 절세통장 종류와 세제 혜택 차이점	8 9
직장인Survival	Deep Work 실천법 - - 깊이 있는 집중이 성과를 만든다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서면법규법인-6587, 2025.04.10) -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274, 2025.05.29)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이촉권 양도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나 별도감정평가해 구분신고시는 기타소득 과세함	11
세무정보	- 국민연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 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키운다	14 38 4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9

# 경영판단 실무적 이해 (3)

##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적용 대상 및 실무 유형: 예시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1. 배경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권한 범위 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때, 당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신의성실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행한 판단이면,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2. 적용 대상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 통상적 경영사항에 대한 재량적, 사업적 판단(투자, 대출, 인수합병, 전략적 선택 등)에 적용된다. 선관주의의무의 구체화 규칙으로서, 이사의 직무 수행 중 재량적 판단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절차·정보 수집과 판단 과정의 합리성이 핵심 심사 대상이다. 법령 정관 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위 자체가 임무불이행(채무불이행)이 되어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확립되어 있다.

### 3.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의사결정 유형 예시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주요 의사결정 유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 자금지원 결정** :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증자 참여, 지원 규모 결정 등은 충분한 정보수집과 절차 준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판단 범주로 보호될 수 있다. [대법원은 관계회사 회생 가능성, 지원 규모의 적정성, 미지원 시 손익 등을 조사 검토하고 합리적 범위 내 선택이면 손해 발생 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A 및 지배주주 관여 거래** : 인수·합병, 지배주주가 관여하는 주식 취득·매각·구조 재편 계약 체결 등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보기반 합리성이 확보되면 경영판단 원칙의 심사 대상이 된다. 지배주주 관여 거래의 경우에도 원칙 적용은 가능하되, 공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소수주주 보호 절차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사업전략·영업정책 선택** : 신제품 출시, 시장진출·철수, 대규모 설비·R&D 투자, 핵심 거래선 공급망 변경 등 사업적 판단은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절차·정보·합리성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자금조달·재무정책** : 회사채 발행, 차입, 자본구조 조정, 보유자산 매각 등 재무적 의사결정도 재량의 영역으로 평가되어 합리적 절차를 거치면 적용된다. 특히 레버리지 거래나 LBO 관련 판단에서는 기초 데이터의 신빙성과 가정의 타당성을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핵심 심사 요소가 되고 있다.

**배당·이익잉여금 처분·주주정책** : 배당정책, 이익잉여금 적립 및 사용, 자기주식 관련 정책 등은 재량적 판단으로서 절차적 적정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 등 주주권 침해적 조치는 임무위배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 위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내부통제 감시 관련 판단** : 대표이사 및 타 이사의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범위와 조치 선택 역시 경영판단의 틀에서 절차적 합리성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법 징후를 알면서 방치하는 경우는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성립하며, 이때는 경영판단 원칙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법령·정관 위반, 회계분식 등 위법 행위 자체는 경영판단 원칙의 대상이 아니며, 위법성이 있는 경우 면책이 부정된다. 이해상충·사익추구가 개입된 자기거래, 현저히 불공정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은 원칙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Q** 수출신고 및 부가세신고 수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업체로 제품수출을 하고 미국업체로부터 대금을 회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과거판매된 수출건에 대해 단가정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1월 ~ 2025년5월까지의 판매내역에 대한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하고, 6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반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각 월별로 단가정산 Credit note을 발행하고, 과거의 홈택스 부가세신고 및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할 경우, 과거의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신고내역은 정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A** 1.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 영세율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관세청 수출신고내역 부분은 국세 내용이 아니므로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쿠폰 인지세 관련하여

**Q** 온라인 쿠폰의 경우 고객이 구매하였다가 취소할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한건지요?

1) 구매 후 당일 취소의 경우

2) 구매 후 시일이 지나서 취소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에 모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인지세법 제3조제8호)

## 법인세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Q** 당사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2018년~2020년까지 개정 후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전 :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이 경우 2018년~2020년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경정신고를 추가할 경우 제127조 중복자원의 배제에 해당되는지요? 아님 추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A** 귀사의 경우 다른 감면이 없고 투자세액공제만 있는 경우라면 물류비용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 유상감자 한도

**Q** 현재 미국이 본사를 두고 있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본금은 140억
2. 자본잉여금(주발초) 422억
3. 자본조정(감자차손) 421억
4.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 206억
5.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4930억

질의사항)

1. 유상감자를 할 경우 최대 얼마까지 유상감자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유상감자 한도)

**A** 이익잉여금의 90%정도를 이익배당성격으로 유상감자한 후 주식소각이 가능할 듯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인정 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사규에 의해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예전과는 달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추세이다 보니 집(부동산)의 공동명의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매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또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당연히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 원천세과-502, 2011.08.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및 기 질의 회신문 (서면1탐-52, 2006.1.16.)을 참조하시기 바람.

하지만 자기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이 아닌 장거리 시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시외출장에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의 소비비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실제 시외출장에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기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기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기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자신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단독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이나 그 밖에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 자신과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량을 소지한 직원이라고 누구에게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직원)이 자기소유(본인 단독명)의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④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명의 차량		불가
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차량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받는 사람	공제한도(10년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6억원 증여시 주의점

※ 남편이 해외주식에 1억원을 투자한 뒤 잔고가 6억원이 되어 아내에게 해당 주식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증여 이후 시세 변동은 없다고 가정)

상황	기준 취득가액	과세 기준	예상 세금
2024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아내의 증여재산가액	차익 없음 → 양도세 0원	0
2024년 12월 31일 이후 증여	1년 이내 매도	남편의 취득가액 (1억원) 수익 5억원 → 22% 과세	1억 1000만원
	1년 경과 후 매도	아내의 증여재산가액 (6억원) 차익 없음 → 양도세 0원	0



## 절세통장 종류와 세제 혜택 차이점

\* 직전 3년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19세 이상

#### 세제 혜택

- 순수익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비과세한도 초과 순수익 분리과세(세율 9.9%)

### IRP (개인형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

-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과 합산)
- 과세이연 :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과세
- 저율과세 : 연금수령시 3.3~5.5% 세율로 과세

### 연금저축

제한 없음

- 세액공제 : 연간 600만원 한도
- 과세이연 :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과세
- 저율과세 : 연금수령시 3.3~5.5% 세율로 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 Deep Work 실천법 - 깊이 있는 집중이 성과를 만든다

진정한 성과는 ‘바쁨’이 아니라 ‘몰입’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칼 뉴포트(Cal Newport)가 제시한 Deep Work(깊은 일) 개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즉, 산만함을 줄이고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는 훨씬 높은 가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1. 집중 환경 만들기

첫걸음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대를 정해 ‘몰입 시간 블록(Deep Work Block)’으로 지정해 보세요. 이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명확한 목표 설정

막연한 집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보고서 초안 작성하기”보다는 “서론 1~2페이지 완성하기”처럼 세분화하면 집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3. 산만함에 대한 자각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잠깐 SNS를 열어봅니다. 이러한 ‘작은 방해’가 집중의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일시적으로 산만함이 찾아왔을 때는, “지금 집중 중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각이 곧 통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4. 규칙적인 휴식과 회복

깊은 몰입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짧은 휴식은 필수입니다. 50분 집중 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면 뇌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아, 더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5. 몰입의 루틴 만들기

Deep Work는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몰입을 반복하다 보면, 뇌가 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이를 통해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문턱’을 점점 낮출 수 있습니다.

# 최신 판례 예규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서면법규법인-6587, 2025.04.10

##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로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 질의법인(동업기업)은 투자자(동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목적회사(이하 'SPC') 지분 100%를 취득하는데 사용한바,
  - 해당 SPC는 종전부터 투자대상기업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보유 중임
- SPC는 투자대상기업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질의법인은 SPC로부터 해당 주식매각대금(이하 "투자회수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 투자회수금 중 일부는 배당, 나머지는 감자 또는 잔여재산 분배의 형태로 수령하며 SPC는 해당 사업연도에 청산 예정

## 질의

-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 동업기업이 수령한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정관 등에 의해 동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자

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 후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해당 금액을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기준법규재산-33, 2025.04.01

## ■ 질 의

- 조특법 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촉권 양도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나  
별도감정평가해 구분신고시는 기타소득 과세함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  
하는 이촉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  
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준법규재산-28, 2025.04.21

### 질 의

- 부동산과 함께 이촉권\*을 양도하면서 이촉권에 대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에 부동산과 이촉  
권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 이촉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  
아야 하는지  
\*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  
우에는 기타소득]

###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  
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  
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의2에 따른 이촉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촉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  
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촉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  
임

사전법규재산-274, 2025.05.29

### 질 의

- 주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  
함한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  
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  
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적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국세청, 내년부터 관광지류 주류도매면허 확대...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담 완화

앞으로 관광지류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류 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민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kl에서 1000kl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kl에서 500kl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전통주 홍보관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주류판매계산서는 주류 제조자 및 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증빙으로 보관하는 문서이나 그간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돼,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민연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 국세청, 2025. 11

## 1 사업장 신규적용

### 가.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 나. 사업장 적용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 다.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라. 신고서류

-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마.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2)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 가. 변경대상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사업장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 내용변경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 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해야 함

### 나. 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다. 제출서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필요 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

## 3 사업장 탈퇴

### 가. 탈퇴대상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2)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3)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나. 사업장 탈퇴일

●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

-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 다. 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라. 사업장 탈퇴신고 시 유의사항

-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탈퇴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2)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해야 함
- (3) 통·폐합 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신설)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자격취득부호 “9”)

## 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1) 본점 사업장을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
  - (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

## 5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 (1) (제도 개요) 전문성을 갖춘 기관[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전문 분야 : 인적자원관리), 행정사(일반행정사)]이 웹EDI로 위탁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처리 편의 제고(2014. 10. 1 시행)
- (2) (신청대상 사업장) 업무대행기관에 신고(신청)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
- (3) (업무대행 범위)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등 업무

## 6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가. 신고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자

(3)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하는 자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음

(4)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일반 일용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 :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 수가 8일 이상 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소득있는 업무 종사> 월 2,989,237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2024년 기준, 사업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나. 근로자의 개념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 대학 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2016.1.1. 시행)

### 다. 자격취득시기

(1)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당연적용사업장) 된 때

(2)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3) 단시간 근로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4)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된 때 또는 1개월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 된 때

(5)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 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6)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이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 된 때

\* 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확인 시 자격 취득

## 라. 제출서류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2)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특수직종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 광원 : 상시 갱내종사 직종과 입궤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공신력 있는 입증자료
- 부원 : 선원수첩사본 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7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 가. 신고대상

(1)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자격취득일, 자격 상실일 등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변경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

(2)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기준소득월액 등

※ 내용정정 신고는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변경은 정정대상이 아님에 유의

●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취소 신고 방법 변경 (2022.7.1.이후)

- 기존 내용변경으로 신고되던 취득취소, 상실취소는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로 변경

변동사유	신고방법
취득취소(최종자격)	상실신고서 (상실사유 26.취득취소)
상실취소	취득신고서 (취득사유 15.상실취-소)

### 나. 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 경우 착오발견 즉시



### 다. 제출서류

- (1)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 공통내용 변경)
- (2)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8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가. 신고대상

- (1) 사용관계 종료(퇴직)
- (2)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3) 60세 도달
- (4) 사망
- (5) 60세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6)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7) 다른 공적연금 가입
- (8)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나.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다. 자격상실시기

-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1) 사용관계 종료(퇴사) 된 때
- (2) 60세에 달한 때
- (3)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일용·단시간근로자가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미만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된 단시간근로자가 가입을 미희망 하거나 사용자가 가입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는 상실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

예시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25.1.12~2.11. 월 55시간 근로, 2025.2.12.~3.11. 월 59시간 근로, 2025.3.12~4.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25.4.14. 퇴사하고 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25.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25.4.15.(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25.1.12~2.11. 월 55시간 근로, 2025.2.12.~3.11. 월 59시간 근로, 2025.3.12~4.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25.4.14. 퇴사하고 근로자 제외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25.3.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25.4.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4) 기초수급자가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때

(5)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6) 사망(사망추정 포함)한 때

● 다음 각 사유는 그 해당하게 된 날

(1)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2)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3)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 해제된) 때

(4)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적용제외 신청한 때



## 9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가. 납부예외

(1) 신청대상 :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 ※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 납부예외 불가(다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납부예외 인정)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전후휴가 납부예외인정 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2) 제출서류

- (가) 연금보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 (나)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산재요양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신고서 제출
-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다. 기타 유의사항

- (1)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예시 : 휴직일)
- (2)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 (3)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

(4) 해외파견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납부예외 대상이 아님에 유의

## 10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 가.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 나.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 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사례

◆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320만원, 480만원인 경우

$$A\text{사업장} \Rightarrow \frac{3,200,000}{3,200,000 + 4,800,000} \times 6,170,000 = 2,468,000\text{원}$$

$$B\text{사업장} \Rightarrow \frac{4,800,000}{3,200,000 + 4,800,000} \times 6,170,000 = 3,702,000\text{원}$$

◆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700만원, 800만원인 경우

- 소득월액은 다르지만, 둘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17만원)에 해당되어 조정한 기준소득월액이 3,085,000원으로 동일함

$$A, B\text{사업장} \Rightarrow \frac{6,170,000}{6,170,000 + 6,170,000} \times 6,170,000 = 3,085,000\text{원}$$

## 11 기준소득월액 결정

### 가. 기준소득월액

#### (1) 개념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금액

(2)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 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 2024.7월부터 2025.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617만원과 39만원임

나. 소득의 범위

(1) 사용자(법인인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한 금액은 포함)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다.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다) (가)와 (나)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2024년 기준 100만원)으로 결정함.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2) 근로자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 (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

Q & A

Q.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 소득월액도 정정해야 하나요?

A. 비정규직(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 변경으로 보아 근로계약 변경시점으로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되어야 하며 재취득시 소득은 정규직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해당 근로 계약 시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 상실 및 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월액 정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현격한 근로시간 변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판단되므로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대상임

Q. 시급, 일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A.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입사(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단, 해당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렵고 월별로 소득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입사(복직)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 처음 3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포함

구분	포함해야 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 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주), 입사(복직)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	비과세소득(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

항목	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	--	---

주)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됨

(다)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rightarrow$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div$  365  $\times$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A사에 2024년 3월 6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급여 내역

- 기본급 : 1,000,000원      • 교통비 : 월 100,000원      •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

신고내용	적정 신고	착오 신고
신고 급여 항목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신고)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입사 월에 지급된 급여 항목만 신고)
산정식	$(1,000,000 + 100,000 + 200,000) \times 12 + (1,000,000 \times 4) + 500,000 \div 365 \times 30$	$1,000,000 + 100,000 + 200,000$
신고소득 월액	1,652,055원 (국민연금에 신고해야 할 소득월액)	1,300,000원 (실제 소득보다 낮게 착오 신고한 소득월액)

※ 업무 특성 상 야간수당 등 특정수당이 당연히 매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시:종합병원 간호사, 생산현장 근로자 등)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받은 수당의 최소 지급 금액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적용기간

- 2024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25년 6월까지 적용
- 2024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26년 6월까지 적용

(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

- (가) 조정대상 : 2025년 7월 1일 현재 신고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인 가입자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 전체  
(나) 조정시기 : 2025년 7월 1일(매년 7월)

## 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 (1)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기간

#### (가) 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미만 절사)을 소득월액으로 결정
-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결정

#### (나)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2) 신고 및 결정대상

- 사업장가입자로서 전년도 중 1개월 이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해당사업장에 종사한 자(12월 1일 현재 납부예외중인 자 제외)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과세자료착오 및 연말정산 미신고 근로자
  -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자료를 공단이 직접 입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별도의 소득총액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3) 신고기한 및 방법

#### (가)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

-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신고

#### (나) 유의사항

- 근무 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 근무일수를 합산해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4) 기타 사항

-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지급하여 소득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하여 소득 신고
- 근로조건 변경과 소득총액 신고기준
  - 입사 당시부터 인턴(시보)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인턴기간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사전 예측 불가) :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마.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 (1)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율(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의 기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가능

신청사항이므로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자는 해당연도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 (2) 시행시기 : 2014.1.1.부터 시행

(3) 적용대상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으며, 기준소득월액변경을 원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4) 소득변경 인정범위

- (근로자)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 (사용자) 변경 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다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에 의한 변경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도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되면 특례 재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소득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용자) 변경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 (6) 정기 및 수시정산 실시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조하여 익년도에 사후확인 실시하여, 연금보험료 정산 실시
- (수시정산) 사후(정기) 정산완료 이전에 자격상실(납부예외) 및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연금액 산정이 필요한 근로자
- (정기정산) 전년도에 기준소득월액 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된 개인사업장사용자 및 자격상실(납부예외)되지 않은 근로자
- 사용관계종료 등의 사유로 익년도 정기정산 완료 이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납부예외)된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조하여 사후확인 실시하여, 연금보험료 정산

-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를 신청한 사업장가입자만 정산 대상임
- 사용자는 당해연도(1월~6월)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내년도 정기정산에 포함

### 바.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 통지

#### (1) 신규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통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매월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2)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 공단은 매년 6월 중순경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전년도 이후 EDI 이용 실적이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정기결정통지서를 EDI로만 통지
  - 연봉제 시행 등으로 정기결정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EDI로만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EDI를 통해 우편 제외 신청
  - ➔ EDI 소득총액신고서 및 정기결정내용 사전안내통지서 화면에서 신청



## 사. 소득 적정신고 확인·정리

### (1) 개요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 (2) 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과세소득이 수정된 근로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 취득(납부재개)시 신고소득이 과세소득 대비 낮은 근로자

### (3) 내용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신고 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 안내문 발송
- 소득관련 공적자료에 비해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 기결정 시점인 7월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단,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소득이 실제지급이 약정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대상은 취득(납부재개)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참고 - 2025년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 소득총액신고란?

#### ● 소득총액신고

-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 ● 전년도 소득총액

- 2024.01.01. ~ 2024.12.31. 기간의 소득총액
  - ※ 연도 중 입사자(사업개시자) : 입사일(사업개시일)부터 ~ 2024.12.31.

###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

#### ● 주요업무 흐름

- ⇨ 2025. 4월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대상자와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 ➔ 2025. 5월 신고대상자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 2025. 5월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 2025.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공단)
- ➔ 2025. 7월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 2026.6월까지)
- ➔ 2025.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개인사업장사용자)

## 소득총액 신고요령

### ● 신고대상

- 2024.12.1.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종인 자 및 2024.12.2. 이 후 납부재개자는 제외),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제외
  - ※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 ● 신고할 사항

- 근무일수 : 2024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일수(휴직일수 제외)
- 소득총액 : 위 근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 사용자(법인 아닌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전 금액)을 신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 상 ⑩번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포함하여 신고[(18)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M02)]
    - ※ 면세나 비과세 등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예 :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공단에 소득총액신고 대상임
    - ※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

### ● 신고기한

-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 2025년 5월말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5년 6월말까지 신고 가능]

### ●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4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일 수 및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024.12.1.이전 취득자 : 2024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적용
- 2024.12.2.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26년 6월까지 적용
  - ☞ 신고소득이 2025년 7월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 7월에 변경됨

● **소득 적정신고 여부 확인**

- 2025. 6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신고
- 2025. 11월 과세자료 대비 개인사업장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경우에는 정기결정시점(2025년 7월)으로 소급하여 과세소득으로 조정

<작성방법 예시>

※ 24.3.1. ○○상사에 입사, 5.1.일부터 5.31.까지 휴직, 6.1부터 복직 근무  
 (단, 공단에 납부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도 없음)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⑨근무처명	○○상사	□□기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2024.3.1.~2024.12.31.				
⑬급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⑭상여	5,000,000	500,000			5,500,000
⑮인정상여					
⑯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2024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근무시작일	공적 휴직일수	실제 휴직일수	소득총액
0001	홍○○	123456-12***	2024.3.1.	3. 1.	0	31	20,000,000

**근무일수 및 소득총액 산출 사례**

- 동일 사업장에 2024.1.1. ~ 3.25.(퇴사) 2024.8.1.(재입사) ~ 12.31.근무 : 153일(8월 ~ 12월 까지만 적용)
- 소득총액도 2024.8월 ~12월까지 소득만 신고

## 기타 소득총액 신고방법

### ● EDI 신고

- 국민연금 EDI(<http://edi.nps.or.kr>)
  - ① “연금통지문서” → “연금통지문서” → ②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통지서” 조회 → ③ 개인별 소득총액입력 → ④ “신고서발송”
- 사회보험 EDI
  - ①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년)”수신 → ② “문서조회” → ③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④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신고

\*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 유선 신고

###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 (팩스신고) 앱 하단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한 웹팩스 신고

## 12 일용 근로자

### 가. 일용 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정내용

(8일 적용 : 2018.8.1.시행, 소득기준 추가 : 2022.1.1.시행)

-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근로자에 포함” 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준 구체화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의 소득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 판단</li> <li>✓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li>✓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li>✓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간 또는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li> <li>✓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li> <li>→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li> <li>✓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li> </ul>

나. 건설현장사업장

(1) 사업장 적용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 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도 당연 가입

(2) 건설현장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필수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
    - (원도급 또는 하도급)공사계약서
  - 추가서류 : 경과조치 사업장 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신고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 사업장 탈퇴
  - 탈퇴일 :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다만,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근로한 날의 다음날
  - 탈퇴 사유코드 : “09-사업종료”로 등록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 가입대상
  -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220만원 이상의 소득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일

-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 ②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 초일(1일)
- ③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최초근로일로부터 1개월 간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자격상실일

-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 ② 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최종월 초일(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http://www.nps.or.kr)) [연금정보]-[자료실]-[기타자료] 에서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책자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4) 건설 일용근로자 소득적용 기준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기준소득월액 특례)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다. 일반 일용근로자

(1) 정의

- 건설현장 외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2)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 가입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또는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220만원 이상의 소득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건설현장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업무 프로세스>**

구분	적용절차
사업장 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면적용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전자고지 신청서(〔별첨〕참조) 제출</li> <li>- 경과조치 사업장은, 입증서류 제출(필요시)</li> </ul> </li> <li>● (EDI로 신고)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성립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I 홈페이지(<a href="http://edi.nps.or.kr">http://edi.nps.or.kr</a>)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li> </ul> </li> </ul>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소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취득신고 :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 된 때(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li> <li>● 가입자 상실신고 : 퇴사하거나 8일 미만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 된 때</li> <li>● 소득변경신고 :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li> <li>● (EDI로 신고) 다음달 5일까지 신고</li> <li>●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li> </ul> </li> </ul>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li> </ul> </li> </ul>
일괄경정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li> <li>●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li> </ul>
수시경정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li> </ul> </li> <li>● EDI로 신청하거나 지사에 내방(전화)하여 신청</li> <li>● 수시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 확정 후 경정결정내역서를 EDI로 재송부</li> <li>● 사업장은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li> </ul>
보험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li> <li>●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li> </ul>

#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국세청, 2025. 11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  
에 앞서, 11.14.(금)부터 12.4.(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  
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입니다.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  
가는 공히 각각 1.1%,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31.(수)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0.63	-0.68	세종	-2.96	-4.14
서울	1.10	0.30	강원	-2.61	해당없음
경기	-1.10	-1.15	충북	-0.81	
인천	-2.45	-1.93	충남	-3.48	

대전	-0.15	0.15	경북	-2.21
대구	-3.62	-2.37	경남	-2.53
광주	-2.69	-1.18	전북	0.82
부산	-1.72	-0.74	전남	-5.75
울산	-3.43	-2.97	제주	-3.06

## 1 2026년 시행 기준시가[안] 개요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m<sup>2</sup>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번 고시대상은 2025.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m<sup>2</sup>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상가 116만호)이며,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시 물량】

(호)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1,331,606	1,158,845	세종	4,058	19,400
수도권	930,581	961,103	강원	9,687	해당없음
서울	378,914	339,841	충북	12,063	
경기	399,824	505,418	충남	31,953	
인천	151,843	115,844	경북	14,035	



대전	18,103	30,724	경남	40,019
대구	31,482	33,464	전북	8,150
광주	25,551	23,427	전남	19,043
부산	151,142	78,823	제주	19,177
울산	16,562	11,904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1.10%, 상업용 건물이 전년 대비 0.30% 상승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한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알림판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중앙화면과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 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의견 제출 방법

- 기준시가에 의견이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4.(목)까지 운영합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4.(금)부터 12.4.(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

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수)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 붙임 1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 고시 범위

####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 고시대상

- 2025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

## 붙임 2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text{ 환산취득가액} = \text{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times \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별도 적용

### 붙임 3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현황[전년 대비]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전년 대비)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6. 1. 1.	오피스텔	-0.63	1.10	-1.10	-2.45	-0.15	-2.69	-3.62	-1.72	-3.43	-2.96
	상업용 건물	-0.68	0.30	-1.15	-1.93	0.15	-1.18	-2.37	-0.74	-2.97	-4.14
2025. 1. 1.	오피스텔	-0.31	1.34	-0.51	-3.59	-0.13	-0.93	-4.37	-0.90	-0.91	-1.11
	상업용 건물	0.51	0.85	0.76	-1.01	0.38	1.11	-0.43	0.07	-0.83	-2.83
2024. 1. 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2023. 1. 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 1. 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 붙임 4 -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전년 대비]

□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651	83,945	175	19,489	267	27,631	209	36,825	28,370	8,455
서 울	157	13,643	29	723	40	6,206	88	6,714	5,587	1,127
경 기	239	40,930	38	5,372	137	20,201	64	15,357	11,346	4,011
인 천	65	10,767	31	5,475	10	-3,753	24	9,045	6,332	2,713
대 전	17	1,192	1	50	9	353	7	789	628	161
대 구	36	3,097	22	1,827	11	429	3	841	790	51
광 주	14	741		247	14	494				
부 산	54	6,864	8	1,246	26	2,675	20	2,943	2,660	283
울 산	5	1,217	-1	22	3	59	3	1,136	1,027	109
세 중	17	967			17	967				
그 외 지역	47	4,527	47	4,527	해당없음					

# 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키운다

- 국세청, 2025. 11

## 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개선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납세 증명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는 '주류판매계산서'는 비용 부담과 문서 분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별 시장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산정방식'이 실제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 중이며 2026. 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2 추진내용

- ①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 전통주 납세증지 부착 완화 : (발효주류) 500㎖ → 1,000㎖, (증류주류) 250㎖ → 500㎖
  - 또한,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여, 연간 약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최근 3년 소규모면허 신규 등록 건수 : ('22년) 91건, ('23년) 87건, ('24년) 102건

- ②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확대하여,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약 10% ↑ 확대, (전통주) 약 20% ↑ 확대

- 이번 개선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입니다.

\* 시음주 승인 신청 건수 : ('22년) 2,359건, ('23년) 3,867건, ('24년) 5,190건

- ③ 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나,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을 허용합니다.

- 다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전통주 홍보와 소비자 체험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전통주 홍보관 내 주류 소매업자 → (개선)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장 추가

- 이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매 단계에서도 전통주를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④ 그동안 주류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 제조자 및 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증빙으로 보관하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어,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류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영수증, 종이문서로 작성 → (개선) 영수증, 종이문서, 전자문서 모두 가능

- 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환경에 맞춰 면허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되어,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 산정 결과 : ('23년) 1개, ('24년) 0개, ('25년) 0개

- 이에 따라,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향후 계획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과 맞지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 붙임 - 제도 개선 세부 내용

##### 1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완화

-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만, 전통주의 경우에는 영세한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주세 감면 대상 수량이 확대\*됨에 따라 부착 제외 기준도 함께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발효주류) 500kℓ → 1,000kℓ, (증류주류) 250kℓ → 500kℓ
  - 이를 통해, 기준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 납세증명표지 부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면허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90여 개\*의 신규 소규모주류 제조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납세증명표지를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고, 사업 초기에는 주류 개발과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최근 3년 소규모주류 면허 신규 등록 건수 : ('22년) 91건, ('23년) 87건, ('24년) 102건
  - \*\* 주류가 반출되는 분기의 4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납세증명표지 부착기준 완화 |**

구분	기 준	개 선
전통주	발효 500kℓ 미만 면제	발효 1,000kℓ 미만 면제
	증류 250kℓ 미만 면제	증류 500kℓ 미만 면제
소규모주류 면허	면제 없음	1분기 면제*

\*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 종료 시점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

**2 시음주 물량 한도, 장소 확대**

-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 홍보를 위해 시음주를 제공하는 경우, 연간 주종별 한도\* 내에서만 제공 가능하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희석식소주) 12,960 ℓ, (맥주) 18,000 ℓ, (그 외 주류) 9,000 ℓ

-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시음주 승인 신청 내역 |**

구분	(건, 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 건수	1,018	2,359	3,867	5,190
제품 종류	1,753	5,660	7,896	10,463

- 따라서,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약 10% ↑ 확대, (전통주) 약 20% ↑ 확대

-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전통주 홍보를 위한 경우라면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전통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도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홍보관 내에서만 가능 → (개선) 국가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장까지 확대

### 3 신규면허 산정기준 개선

- 그동안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류 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되어 지역별로 변화된 인구·소비·시장환경이 면허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 산정 결과 : ('23년) 1개, ('24년) 0개, ('25년) 0개
- 이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 값에서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시장환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관광지역의 경우 주류소비량은 많지만 인구수가 적어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실제 유통 수요를 반영한 면허 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개선을 통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며, 지역별 시장환경에 맞는 주류유통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4일 (금)	11월 17일 (월)	11월 18일 (화)	11월 19일 (수)	11월 20일 (목)
미 달 러 (USD)	1469.50	1458.50	1458.30	1465.20	1465.00
일 본 엔 (JPY)	950.67	944.10	939.51	942.13	932.76
영 국 파 운 드 (GBP)	1933.49	1920.48	1918.47	1926.52	1912.70
캐 나 다 달 러 (CAD)	1047.06	1040.08	1037.79	1047.69	1043.15
홍 콩 달 러 (HKD)	189.11	187.65	187.58	188.22	188.08
위 안 화 (CNH)	206.48	204.86	205.30	206.23	206.10
유 로 화 (EUR)	1708.96	1695.29	1690.46	1696.77	1690.54
호 주 달 러 (AUD)	959.95	952.91	947.38	953.92	949.76
싱 가 폴 달 러 (SGD)	1129.69	1123.35	1119.53	1125.52	1121.4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55.90	352.93	351.40	351.87	353.01